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치심’ 을 ‘불쾌감’ 으로 용어 변경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63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3
2. 허위영상물 구입·저장 및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Ⅲ. 검토의견

1.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용어 변경

- 개정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구성요건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 ----- -----불쾌감----- ----- ----- ----- -----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

현행	개정안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쾌감-----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 ----- ----- ----- -----불쾌감----- ----- ----- -----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제14조의3(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현행	개정안
또는 <u>수치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u>촬영물</u>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쾌감----- ----- <u>촬영물, 편집물등</u> 또는-----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과 관련하여, ‘수치’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근거하는 용어이고 피해 감정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임.

○ ‘수치심’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이를 수정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 ‘성적 수치심’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

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14조의 ‘성적 수치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²⁾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볼 때 ‘수치심’과 ‘불쾌감’이 대체가능한 용어인지, ‘성적 수치심’의 개념에 ‘불쾌감’이 포섭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법률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성적 수치심’의 개념에 대하여는 기존에 판례 등이 누적된 상황이므로, 용어 변경으로 실무상 적용기준이나 범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용어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2)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결정

2. 허위영상물 구입·저장 및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처벌

-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 ----- ----- ----- ----- ----- -----불쾌감----- ----- ----- ----- ----- -----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② ----- -----이하 “편집물등”이라----- -----

현행	개정안
을 포함한다. <u>이하 이 항에서 같다</u>)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u><신설></u>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u>수치심</u>을 유발할 수 있는 <u>촬영물</u> 또는 복제물(복제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u>제4항</u>----- ----- -----. 제14조의3(촬영물 또는 <u>편집물</u>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u>불쾌감</u>----- -----<u>촬영물, 편집물등 또는</u>

현행	개정안
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에 의해 제작된 허위 영상물 모두 원천적으로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허위영상물이 실제에 가깝게 정교해지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피해는 실제 촬영물과 차이가 없다는 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 구입·저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최근 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³⁾에는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